

# 「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10월 2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9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5년 11월 3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경제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이 폐지되고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대체됨에 따라, 현행화 및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근거 법령 현행화: 안 제2조  
(기존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  
(개정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유진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# 「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5. 10. 23.
- 회부일자 : 2025. 10. 29.
- 상정일자 : 2025. 11. 3.

### 2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이 폐지되고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대체됨에 따라, 현행화 및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근거 법령 현행화: 안 제2조  
(기존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  
(개정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이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대체됨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2023년 7월 10일 시행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부칙 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에서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인용한 상위법 제명을 현행화함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에 인용한 상위법 제명이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대체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**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**

**제14조(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** 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1. 부칙 제21조제8항: 2025년 1월 1일
2. 부칙 제21조제22항: 2024년 3월 29일
3. 부칙 제21조제41항: 2024년 1월 18일

**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**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.

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2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#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23.

제 출 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이 폐지되고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대체됨에 따라, 현행화 및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근거 법령 현행화: 안 제2조

1) (기존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

1) (개정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생략

-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
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5469(2025. 10. 1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5469(2025. 10. 1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36658(2025. 10. 1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5712(2025. 10. 13.)호]
- 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16298(2025. 10. 20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“전략산업”이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(이하 생략)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“전략산업”이란 <u>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</u>에 따라 (이하 생략)</p>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### 제14조(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시

·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(광역시·군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
 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 대체에 따른 현행화 사항으로,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.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장 전해순
연락처	(033) 330 - 2540